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6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박해철 · 이용우 · 이재관
이재정 · 한민수 · 박균택
박지원 · 김승원 · 이용선
최혁진 · 이광희 · 허성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5년의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나아가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금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

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9조).

법률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출연금으로 지급”을 “출연금·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연금”을 “출연금·보조금·융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5년</u> 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u>3년</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생략)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u>출연금으로 지급</u> 할 수 있다.	② ----- ----- ----- <u>출연금·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u> -----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u>출연금</u> 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u>출연금·보조금·융자금</u> ----- ----- -----.